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5. 30. ~ 6. 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4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993호
----------	--------

○ 발의연월일 : 2019. 5. 29.

○ 발 의 자 : 이영란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에 대한 지원근거 및 장애인 등급제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전남도 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이용대상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행차량,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 안 제10조)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추가(안 제11조 ~ 안 제18조)
-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9조 ~ 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복지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평가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보행환경의 조성 계획 및 평가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자치행정국장

나. 시민복지국장

다. 안전도시국장

라.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다.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시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라 한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비
3.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
4.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인 이내)
-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복지용구)

나. 만 65세 이상자 :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다.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
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
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
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다만, 심야시간(00:00 ~ 04:00) 요금은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의 2배 이하

가. 관내요금 :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시내버스요금

나. 관외요금 :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을 시장(특별교통수단등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은 출발지가 순천시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 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시를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 형	교통약자 유형	☐ 장애(장애)				☐ 65세 이상 고령자		
		☐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 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동 ○○번지)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통약자 유형	☐ 장애 (장애)	☐ 65세 이상 고령자	☐ 기타 ()		
차량 유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정 사유					

 년 월 일

순천시장(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150명당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 ----- ----- -----.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 -----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
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 4. (생략)

②·③ (생략)

1. -----
-----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
람에 한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박계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994호
----------	--------

○ 발의연월일 : 2019. 5. 29.

○ 발 의 자 : 박계수 의원

1.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할 진료비 및 지원대상 범위와 연간 지원한도액을 규정함 (안 제3조)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부당 수급을 방지하고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 「수의사법」 제17조(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5. 예산상황 : 별도조치 필요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과 고양이·새·그 밖의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내로 한다. 다만, 동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병원 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